

## 2. 정부 정책 동향

### □ 정책 이슈 :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

- (논의 배경) 기업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, 특별법 제정 원칙과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른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음
- (국책 연구기관의 입장) 특별법은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, 대기업 그룹을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
  - (경영권) 경영 실책이 큰 기업주의 경영권을 박탈해야 하며,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은 대출금 출자전환을 협용하되, 주식 확보 등 그 대가를 요구해야 함
  - (채무보증 문제) 부실기업의 보증 기업이 채무를 주식이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,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증기업도 부실기업으로 간주하여 처리해야 함
  - (주식매수청구권 문제)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함. 다만, 비합리적인 매수가격 결정을 개선하여 매수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제한할 조치는 필요함
  - (세제 지원 문제) 기존에 정부가 마련해 놓은 다양한 세제 지원책만으로도 충분 하므로 추가적인 지원은 불필요함
- (민간 기업 입장)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
  - (경영권)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인정해야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함. 대출금 출자전환시에도 의결권에 제한을 두어 기존 경영권을 보호해야 함.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존 대주주가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
  - (채무보증 문제) 방대하고 복잡하게 얹힌 대기업 그룹의 상호지급보증을 단기간에 해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
  - (주식매수청구권 문제) 소액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권 남용은 사업교환이나 M&A시에 기업에게 자금부담과 시간 지연을 야기할 수 있음
  - (세제 지원 문제)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납세 연기만으로는 불경기하에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없음.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시적이나마 적극적인 세제 감면 조치를 해야 함

(정 반석 bsjoung@hri.co.kr ☎ 724-4045)

금주의 정책 개관 (10. 19~10. 25)

금융감독위원회(10.19): 계열사 상호보증 모델 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력 기업 위주로의 계열구조 개편 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델 형태로 제시</li> <li>- 주거래 은행이 보증기업으로부터 현금 혹은 주식을 받는 대신, 피보증기업에 대한 보증을 없애주는 방식</li> </ul>
경제대책조정회의(10.20): 경기활성화 종합 대책 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는 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을 기업 지원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</li> <li>-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의 대기업 무역어음 할인 재원을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</li> </ul>
한·미 양국(10.21): 자동차 협상 타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동차세 구조의 축소(7단계→5단계) 및 단계별 세액 인하,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2005년까지 연장 시행</li> <li>- 자동차 저당권제 도입 및 2002년부터 안전검사제도를 '형식승인제'에서 '리콜제'로 전환</li> <li>- 슈퍼301조 발동에 따른 통상 마찰을 1년만에 해소</li> </ul>
재정경제부(10.21): 99년부터 출판업 완전 개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서적출판, 주정제조, 외항 화물운송 등 18개 업종에 대해 부분 혹은 전면 개방</li> <li>- 또한 카지노, 뉴스제공, 육우사육 등 13개 미개방 업종도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</li> </ul>
제4차 정재계 간담회(10.22): 5대그룹 구조조정 12월 중순까지 마무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異업종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연내 완전 해소</li> <li>- 반도체를 제외한 6개 자율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신규 법인 설립 및 외자 유치 방안을 10월 말까지 제출</li> <li>- 재계가 요청한 '구조조정 특별법'은 제정하지 않을 방침</li> </ul>
금융감독위원회(10.22): 대기업 회사채 발행 규제 백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대 그룹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시중 자금을 독점하는 현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</li> <li>-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회사채 중 특정 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의 비중이 10~15%를 넘지 않도록 규제</li> </ul>
재정경제부(10.23): 신용카드 사업 신규진입 허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9월말로 일단락되고, 소비자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허용</li> <li>- 최저 자본금 200억 원 이상으로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7% 이상이면 가능</li> </ul>
금융감독위원회(10.25): 자금난 우량기업 적극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금난을 겪는 우량기업은 기업이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이 발굴하여 기업개선 작업(워크아웃)을 추진</li> <li>-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는 사적인 계약 형태이나, 법률에 의한 것처럼 강제력이 있음</li> </ul>

(곽 용 선 yskwak@hri.co.kr ☎ 724-4058)